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제 654호

재출년월일 : 2000. 11.21.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정사유

○ 고성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·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 안정도모

2. 주 요 골 자

○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

○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

○ 기금지급은 연2회(상·하반기 각1회)

○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 10,000,000원

3. 참 고 사 항

○ 지방자치법제35조(지[illegible]회의결사항)

○ 지방자치법제118조[illegible]변성 및 의결)

○ 지방재정법제110조[illegible]운용등)

○ 고성군저소득주민[illegible] 지급조례제7조(장학기금의 조성[illegible]

4. 본 문 : 붙임과 같[illegible]

2001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1. 법적근거

○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. 기금의 설치·운용
○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
.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.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○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.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
.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.
○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7조(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)
. 사업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영
. 기금은 고성군의 일반회계출연금, 기탁금, 기타수입으로 조성
.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

2. 2001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

○ 2001년 기금조성계획 ---------- 142,638천원

◦ 기조성액(예상) : 133,367천원

◦ 이자수입(예상) : 9,271천원

○ 2001년 기금사용계획 ---------- 10,000천원

◦ 장학생 선발 : 27명

◦ 장학금 지급 : 10.000천원(5,000천원 x 상·하반기 각1회)

- 특별장학금 : 5명 2,400천원(1,200천원 x 상·하반기 각1회)

- 일반장학금 : 22명 7,600천원(3,800천원 x 상·하반기 각1회)

○ 2001년말 조성예상액 ---------- 132,638천원